



**투자설명서 변경**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
|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        | -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br>-제2부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br>-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<환매수수료: <u>종류A, 종류S -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<br>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> | <환매수수료: <b>없음</b> > 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       | <변경 대상 항목><br>- 제2부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 | <변경 대상 항목><br>(신설)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등   |
| 3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 | <변경 대상 항목><br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br><u>&lt;신설&gt;</u><br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<br><u>&lt;신설&gt;</u>  | <변경 대상 항목><br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br>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>13. 이 투자신탁은 <b>(중간 생략)</b> 의미합니다.<br>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<b>(이후 생략)</b><br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<b>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(FATCA) 및 미국납세의무자 (US Taxpayers)</b> |

**간이투자설명서 변경**

(1) 기재 정정 사유

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2. FATCA 관련 유의사항 문구 추가

| 변경내용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         | -II. 매입, 환매관련 정보 1. 수수료 및 보수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<br><환매수수료: <u>종류A, 종류S -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<br>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 > | <환매수수료: <b>없음</b> >   |
| 2. FATCA 관련 유의 사항 문구 추가 | <변경 대상 항목><br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br><b>&lt;신설&gt;</b>   | <변경 대상 항목><br>[투자결정시 유의사항]<br>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 (또는 1인 이상의 미국(법)인이 10%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)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-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br>13. 이 투자신탁은 <b>(중간 생략)</b> 의미합니다.<br>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. <b>(이후 생략)</b> |

### 집합투자규약 변경

#### (1) 기재 정정 사유

#### 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

| 변경내용           | 변경 전  | 변경 후  |
|----------------|---|---|
| 1. 환매수수료 부과 면제 | 제41조(환매수수료) 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~생략~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br>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br>1. <u>종류A, 종류S : 30일 미만 이익금의 70%,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</u><br>2. <u>종류A, 종류S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: 90일 미만 이익금의 70%</u><br>③(생략) | 제41조(환매수수료) <b>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b> |